

연구책임자 연구실 운영 지원금 자주찾는 Q&A

문1. 논문게재·교정료 신청 시, 산학협력단 논문게재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가요?

⇒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이중지원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다만, 타 지원사업에서 일부금액을 지원받은 후 차액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문2. 연구실 운영 지원금 미사용 금액은 계속 이월이 되는건가요?

⇒ 지원금 사용기간은 2년입니다. 예를들어 '19년 지원금 잔액은 '20년 지원금 배정 시 '이월금' 항목으로 추가 배정되며, 이월금은 '20년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게 됩니다.

⇒ 추가로, 연구실 운영 지원금은 교내 재직중인 연구책임자 대상의 지원사업이므로 퇴직예정 연구책임자께서는 퇴직전까지 연구실 운영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3. 학회 임원으로써의 회비 지출은 가능한가요?

⇒ 학회 임원으로 납부하는 회비는 개인성경비로서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. 그러나 그 경비가 학회 연회비라면 학회 연회비 기준을 첨부하여 일반회원의 연회비 금액으로 지출이 가능합니다.

문4. 현지자료조사 등에 따른 피복비 집행이 가능한가요?

⇒ 수행 연구과제의 실험용 의류의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등산복, 등산화(안전화 제외) 등의 의류는 경상피복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.

문5. 연구환경유지비로 어떤 것을 집행 가능한가요?

- ⇒ 연구환경유지비는 연구실 환경유지에 관련성이 있는 비품 및 기기의 구입과 유지비용에 집행 가능합니다.
- ⇒ 실험실용 냉난방기/수리비, 책상, 의자, 청소용품 등 집행가능합니다.

문6. 집행 불가능한 품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?

- ⇒ 신문구독료, 명함(첩)제작비, 세차비, 차량정비 및 보험료, 피복비, 주유비, 범칙금,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
(다만,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, 주유비, 실험용 의류는 인정)
 - ⇒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교육훈련비, 회의비, 세미나 참가비, 학회 연회비, 도서구입비
 - ⇒ 평일 점심 초과근무 식대(회의비는 가능)
 - ⇒ 연구책임자 소속 최소단위(연구실) 부서 연구원,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
 - ⇒ 타 기관 초청에 의한 전문가 자문료 및 체재비를 지급받은 경우의 출장여비
- ※ 위의 집행 불가 품목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」 부당집행 기준, 올바른 연구비 집행을 위한 연구비 집행 Q&A 사례집, 사업질의응답 중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.